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332 | 2026.5.18 (2026.5.11~2026.5.17)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6~'28)」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데이터·AI 기반 선제적 제품안전관리로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4대 전략과 16개 중점과제를 담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AI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개인정보 활용이 전 분야에서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대형화되는 유출사고에 보다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입법(행정)예고】

<산업통상부>는 해저 광물자원 개발 실무위원 위촉 대상 분야를 확대하고, 원상회복 이행 기간을 최대 5년으로 확대하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를 정하고,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시 정보 범위 및 정보제공청구 절차 등을 정하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불법하도급을 적발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지로 처분을 요청하지 않고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지방국토청장에게 불법하도급에 대한 직접 처분권한을 위임하는 등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3주 전에 하도록 하며, 소집 통지 시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주주총회가 종결된 후 2주 내에 의결권의 제한 등을 포함한 주주총회 의결 결과를 공고하도록 하는 등 주주총회의 회사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특별각하신청 제도 도입, 입증책임 전환, 소송비용 부과, 피해자 구제(반소) 등을 마련하여 사법제도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자유로운 공익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공익 참여 보장을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안(최혁진의원 등 11인)」,

사회기반시설의 범위를 ‘병영시설’에서 ‘국방시설’로 확대하고, 민간의 자본력으로 신속히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국가 등으로 귀속시키고 사업시행자에게 국가등이 총민간투자비를 지급하는 BT(Build-Transfer) 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

인공지능의 해당 결과물 자체에 코드 또는 문자 · 부호 등을 삽입한 비가시적 또는 가시적 워터마크를 생성하여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생성 사실을 고지 · 표시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고지 · 표시를 훼손 또는 위작 · 변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0인)**」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변경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

이용자가 선택하는 요금제를 이유로 요금제 간 지원금의 차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도록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하면서 전기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단말장치에 적용할 수 있는 요금제별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 조건을 이용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

OTT, 포털사업자, 복수채널사용사업자를 분담금 징수대상에 추가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징수 기준을 완화하며, 방송통신콘텐츠 제작비용 지출 규모, 영업손실 등을 분담금의 면제 · 경감 또는 징수율 차등 책정에 고려할 수 있게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2인)**」 ,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입주자와 분양 또는 임대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해당 시설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별도의 문서로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확인 서명 등을 받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3인)**」 ,

시멘트를 재활용하거나 시멘트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도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시멘트를 판매하는 자는 판매자와 판매량을 포함한 유통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사용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인사 · 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제외한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한정하는 등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

혁신기술을 건축물에 융복합한 혁신건축물의 조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규제 특례, 실증 지원 및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려는 「**혁신건축 융복합 건축물 조성 지원법안(전용기의원 등 10인)**」,

산업단지 등에서 설치되는 산업시설에 대하여 동일 공장부지 내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동이나 시설별로 건축허가를 별도로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3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산자위>, <기후노동위> 등에서 법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6~’28)」 발표(관계부처 합동) 7
-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 발표(개인정보보호위원회) 8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국무조정실) 1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재정경제부) 1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재정경제부) 10
-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국방부) 11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토교통부) 11
-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1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1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공정거래위원회) 12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부) 13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3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3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14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4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16
- 공익 참여 보장을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안(최혁진의원 등 11인) 16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0인) 17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1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18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18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0인) 19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19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20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2인) 20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21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3인)	21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3인)	22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2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의원 등 10인)	22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23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23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2인)	24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4인)	24
• 혁신건축 융복합 건축물 조성 지원법안(전용기의의원 등 10인)	25
•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의원 등 10인)	25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의원 등 13인)	2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의원 등 11인)	26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31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입법전략자문] 기업 보유 농지의 전수조사 실시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 [글로벌리스크대응] [통상산업정책 뉴스레터] 이란 전쟁과 ‘물류 이전 단계’ 리스크의 구조적 등장
- [공정거래] 공정위, 위원 정수 증원 및 디지털포렌식 조직 신설 등 조직 개편
- [방송통신(TMT)]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 발표
- [공정거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및 공정위의 플랫폼 불공정약관 심사 관련 시사점
- [환경] 개발사업을 성공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2) - 판례로 본 환경영향평가법 핵심 이슈
- [건설/부동산] 세종 건설클레임센터 Monthly Insight 5월호
- [기업지배구조/경영권 분쟁] [2026년 정기주주총회 리뷰] 제4호 : 권고적 주주제안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6~’28)」 발표 - 해외직구 안전관리 강화, 위해도 기반 규제 합리화, AI 활용 시장감시체계 도입	2026-05-12
---------	---	------------

정부는 제7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6~’28)」을 발표했음

최근 해외직구와 온라인 유통 확산으로 위해제품 유입 우려가 커지고, 다양한 형태의 신제품 출시로 새로운 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정부는 데이터와 AI를 제품안전 전주기 관리에 적용하고,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여 촘촘한 제품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번 계획은 “데이터·AI 기반 선제적 제품안전관리로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4대 전략과 16개 중점과제를 담았음

① 사고 예방 중심의 선제 대응체계 구축

해외직구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안전성 조사를 대폭 확대(’25: 1,000건→ ’28: 2,000건 이상)하고,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

AI·융복합 제품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R&D와 실증을 연계한 대응체계를 마련. 또한, 소비자 수요를 반영해 비관리 품목을 발굴하고, 제품안전 사각지대를 신속히 해소할 계획

② 위해도 중심의 사전규제 합리화

제품의 위험 수준과 특성을 반영해 안전관리 품목과 규제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중복 시험 방지 등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완화

배터리 내장 제품 등 사고다발 품목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스마트가전 등 신유형 제품의 안전기준도 적기에 정비.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인증 비용 지원과 위해도 평가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 제고

③ 데이터·AI기반 빈틈없는 사후관리 강화

화재·사고, 유통량을 고려해 위해우려가 높은 품목을 선정하여 집중조사(전년 대비 1.5배)를 실시하고,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합동 단속도 강화. 제품사고 정보 수집·분석 과정에 AI를 도입하여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온라인 유통시장을 AI 기반으로 상시 모니터링하여 위해제품 유통을 차단할 계획

④ 소비자·민간중심 참여형 안전관리기반 조성

정부 중심의 관리체계를 넘어 기업·유통플랫폼·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전환. 온라인 유통플랫폼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위해정보 공유와 리콜 협력을 확대

제품안전정보포털을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안전관리원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 발표

- 중대·반복 위반 시 매출액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 부과로 억지력 강화
- 기업의 자발적 보안 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체계 전면 개편
- 고위험 분야 정기 점검 및 국민 권리 보호 강화

2026-05-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했음. 이번 계획은 AI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개인정보 활용이 전 분야에서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대형화되는 유출사고에 보다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힘

(1) 중대·반복 위반 제재 강화로 억지력 제고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 과징금 산정 기준도 현행 '3년 평균 매출액'에서 '직전 연도 매출액'과 '3년 평균 매출액' 중 높은 금액을 적용

신속한 조사와 처분을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 증거 은닉 행위는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할 계획

(2) 자발적 보호투자 확대 및 위험기반 관리체계 구축

기업이 형식적인 보호법 준수를 넘어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투자 확대와 책임경영을 강화하도록 유도. 앞으로는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선제적 보호조치, 적극적인 보안투자, 실효적인 안전관리체계 운영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경영진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공개하도록 유도해 기업 스스로 보호 역량을 높도록 할 계획

(3) 신속한 피해구제와 회복 지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다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유출 사고 시 기업·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전반적인 입증 책임을 기업이 지도록 해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활성화

다크패턴처럼 이용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만들어 개인정보 수정, 동의 철회, 탈퇴를 어렵게 하는 행태를 집중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도 전문상담과 컨설팅, 피해조치 지원 등 기능을 강화

민감정보 유출 시에는 SNS 등에서의 불법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탐지·삭제하고, 수사기관과 협력해 개인정보 불법 유포자와 이용자를 끝까지 추적·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시행일자
국무조정실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	2026-11-13 시행 예정

기존규제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등을 거처도록 하여 그 폐지·완화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며, 국제규제협력 사업 및 규제정보시스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개선 업무수행 공무원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5-14 시행
-------	-------------------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국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도록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특례를 마련하며, 환율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특례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 시 수입배당금에서 차감하는 금액의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하여 국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의 세부 기준 등을 정하며,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5-12 시행
-------	---------------------------------	---------------

국가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특수한 안전기준이 요구되는 계약에 대해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물가변동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조정된 경우 최초 입찰 시 정한 가격을 변경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며,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담합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경우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고,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추정가격 중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감사원에 통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

2026-05-15 시행

경영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체의 보증부담을 완화하고, 함정건조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와 함정을 건조하는 계약을 체결한 조선업체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조선업체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제출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는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6-11-13 시행 예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인가·허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령해석의 지원, 협의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의 조사 및 사전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에 소속된 임직원 등이 지원센터의 운영 과정에서 적극적인 행정 수행이 위촉되지 아니하도록 면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허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2027-05-13 시행 예정

공항과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특화된 공항경제권으로 개발·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항이 지역과 연계되어 특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6-11-13 시행 예정

현재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 IPO)는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이후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공모가를 확정하여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관투자자들이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공모주를 배정받기 위하여 수요예측 참여 시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단기에 매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적정 공모가가 산정되지 아니하고 상장 후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바,

기업공개 시 발행인 등은 증권신고서의 제출 이전에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투자수요조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수요예측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공개 시 6개월 이상의 보호예수보호예수를 조건으로 특정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에 배정할 수 있는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합리적인 공모가의 산정과 중·장기 투자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6-05-12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하는 연간 사건 수는 1997년 1,374건에서 지난해 2,495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산업의 융·복합,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 또한 급격히 높아졌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위원 수는 1997년과 동일하여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피해구제 또한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병목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 1명씩 증원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산업통상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5.14. ~2026.06.08.

채취권 소멸 이후 해저 구조물의 원상회복 의무 기간을 현실화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임

① 해저 광물자원 개발 실무위원 위촉 대상 분야 확대 (안 제2조의4)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개정('25.5월)으로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분야가 '해양 및 해저광물자원 분야'에서 '해양환경, 지질, 재난안전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하위 위원회인 실무위원회도 이에 맞추어 대상분야 확대

② 원상회복 이행 기간을 최대 5년으로 확대 (안 제11조)

- 해저구조물 위치·규모, 관련 법령상 인허가 절차 진행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

※ 문의처 : [산업통상부 자원안보정책과](#) (전화: 044-203-5251, 팩스: 044-203-4764)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5.15. ~2026.06.24.
-------	--------------------	-----------------------------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적발하여 지방정부로 처분 요청 시 불법하도급 단속주체와 처분주체가 상이하여 불필요한 행정지연이 발생하므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불법하도급을 적발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지로 처분을 요청하지 않고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지방국토청장에게 불법하도급에 대한 직접 처분권한을 위임하고자 함

불법하도급을 통해 시공 중인 건설현장의 경우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기 전에 조속히 적법한 하도급계약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법하도급 자진신고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 불법하도급을 숨기기에 급급한 실정이므로 지정한 기간 동안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시정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문의처 :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과](#) (전화: 044-201-3511, 팩스: 044-201-5548)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5.15. ~2026.06.24.
-------	-----------------------------------	-----------------------------

각종 계획의 통합 수립, 주민단체의 조기 설립 지원, 동의서 인정 특례 도입 등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322, 2026. 2. 3. 공포, 2026. 8. 4. 시행)됨에 따라

주민대표단의 승인 절차, 운영 방법, 업무 범위 등을 정하고, 주민대표단에 의한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마련하며, 예비사업시행자에 의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및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 특례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유사한 동의를 하는 경우 다른 동의를 인정하는 특례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본 동의 내용의 철회 방법을 마련함

또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에 대한 검인 방법을 마련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의 특례 적용을 위한 주택단지의 구분 방법을 정하며, 투기행위 방지를 위한 행위제한 절차와 특별정비에정구역의 결합을 위한 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신도시정비기획과 \(전화: 044-201-4927, 팩스: 044-201-5532\)](tel:044-201-4927)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5.12.
~2026.06.2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포('26.5.12)되어 시행 예정('26.8.13)임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법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할 때 금융위원회 알려야 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 대상 정보에 본인의 채무·연체정보를 추가하여 채무 관련 증빙서류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전화: 02-2100-2629, 팩스: 02-2100-2548\)](tel:02-2100-262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5.12.
~2026.05.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 (안 제2조의2 신설)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자로서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게재·전송·공유·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중에서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

②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시 정보 범위 및 정보제공청구 절차 등 (안 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 개정)

- (이용자 정보 범위) 권리침해 당사자가 분쟁조정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 청구 가능한 이용자 정보 범위로서 성명, 주소, 해당 이용자의 연락처 등 필요 최소한 정보를 규정(제31조)
- (정보제공청구의 절차) 정보제공여부 결정 주체가 기존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서 “분쟁조정부”로 명칭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 정보제공청구서에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를 기재하도록 규정(제32조)
- (정보제공의 절차) 정보제공 절차 진행 주체가 기존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서 “분쟁조정부”로 변경된 것을 반영(제33조)

③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인 게재자의 범위 (안 제35조의4 신설)

- 직전 3개월간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한 수익을 얻는 자로서,
-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당시 구독자·친구·회원 또는 이에 준하는 명칭으로 해당 게재자가 정보를 게재할 경우 이를 수신하도록 설정한 자의 수가 10만 명 이상 또는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콘텐츠의 월별 합산 조회수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자로 규정

※ 문의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tel:02-2100-1642) (전화: 02-2100-1642, 팩스: 02-2100-0140)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2026-05-11 발의

주주총회와 관련한 규정들의 개정을 통해 주주총회의 회사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확실히 하고 주주의 권리를 보다 확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 ①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는 경우 3주 전에 통지하도록 하며, 소집 통지 시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함 (안 제542조의4제1항 및 제3항)
- ② 상장회사의 주주총회가 종결된 후 2주 내에 의결권의 제한 등을 포함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의 결과를 공고하도록 함 (안 제542조의4제4항)
- ③ 전자주주총회와 전자적 방법으로의 의결권 행사 시 주주 확인절차에 있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인증수단을 제공하도록 함 (안 제542조의15)
- ④ 합리적인 주주제안이 가능하도록 이사회가 재무제표 등을 승인하려는 경우 미리 배당정책 등을 공시하도록 하며, 배당 안건에 대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등의 승인을 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제안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함 (안 제542조의16)
- ⑤ 주주명부 폐쇄 시 그 기간을 2개월 이내로 하도록 하여 실제 주주와 의결권 행사자 간의 불일치를 최소화함 (안 제542조의17)
- ⑥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경우 세부적인 사항을 각각 구분하여 그 한도 및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결의하도록 함 (안 제542조의 18)

법제사법위원회

공익 참여 보장을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안(최혁진의의원 등 11인)

2026-05-13 발의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의 자유·집회·결사의 자유는 민주사회 핵심 기본권임에도, 최근 일부 기업·공공기관 등이 언론·시민·노동자를 상대로 비판 보도나 공익 제보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정정보도 요구·형사고소 등을 남발하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전략적 봉쇄소송은 승소 자체보다 소송 그 자체로 상대를 격리·위축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자유로운 행사 가능성을 위축하고 비판적 의견을 억압하며 시민들의 공익 참여를 실질적으로 저해하고 있음

이에 미국·캐나다·호주 등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특별각하신청 제도 도입, 입증책임 전환, 소송비용 부과, 피해자 구제(반소) 등을 마련하여 사법제도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자유로운 공익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건강한 공론장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0인)

2026-05-13 발의

최근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으로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급증함에 따라, 영리적 목적의 수집·이용 과정에서 대규모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자료 제출 거부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 위반행위에 대한 위법 사실 규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현재의 벌칙 또는 과태료의 부과만으로는 자료제출 및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회원 가입은 간소화하면서 탈퇴나 동의 철회는 복잡하게 설계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사실상 방해하는 절차적 기만 행위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됨

이에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이 법 위반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검사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절차적 설계를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38조제4항, 제63조의3 신설 등)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2026-05-13 발의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은 준공 후 최대 50년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대사업의 경우에는 사용·수익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간투자사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부대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도 민간투자사업자금으로 한정하고 있어 부대사업 자금은 보증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부대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으로 공급이 시급하고 공공성이 강한 시설의 경우에는 민간이 운영권을 행사하는 BTO 방식 또는 정부가 임대료를 지급하는 BTL 방식보다, 민간의 자본력으로 신속히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국가 등으로 귀속시키고 사업시행자에게 국가등이 총민간투자비를 지급하는 BT(Build-Transfer) 방식이 적합한 경우도 있어 이를 새로운 방식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 ① 사회기반시설의 범위를 ‘병영시설’에서 ‘국방시설’로 확대함 (안 제2조제1호다목).
- ②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으로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총민간투자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BT(Build-Transfer) 방식을 도입함 (안 제4조제5호 신설 등).
- ③ 부대사업 시행을 위해 기부채납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기간을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기간에 맞춰 연장함 (안 제21조의2)
- ④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을 민간투자사업자금뿐만 아니라 부대사업 자금으로 확대함 (안 제30조)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2026-05-14 발의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① 공익사업을 위해 2년 이상 보유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 (안 제77조)
- ②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이나 물류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토지·건물을 2026년까지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2031년까지 5년 연장함 (안 제85조의7, 제85조의9)
- ③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 (안 제109조)
- ④ 중소·중견기업이 수입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관세 감면조항의 일몰조항을 5년 연장함 (안 제118조)
- 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및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 (안 제121조의34, 제121조의35 등)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2026-05-14 발의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조항을 연장하여 교통, 주택, 지역균형발전 및 서민금융 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① 지방 소재의 미분양 아파트를 신축하여 발생하는 취득세 감면조항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안 제33조의3제1항)
- ②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 3등급 이상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하는 취득세 감면조항을 5년 연장함 (안 제64조제4항)
- ③ 전기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조항을 5년 연장함 (안 제66조제4항)
- ④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을 5년 연장함 (안 제79조의2제1항)
- ⑤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을 5년 연장함 (안 제80조의2)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0인)

2026-05-11 발의

현행법은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의무를 인공지능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고지 또는 표시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 않아 유통 과정의 가공 등으로 인하여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이 이용자에게 전달되지 아니하고 사람이 직접 만들거나 실제로 존재하는 정보로 유통될 위험이 있음

따라서, 해당 결과물 자체에 코드 또는 문자·부호 등을 삽입한 비가시적 또는 가시적 워터마크를 생성하여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생성 사실을 고지·표시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고지·표시를 훼손 또는 위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인공지능 투명성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안 제31조제3항·제4항 및 제42조제2항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2026-05-12 발의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이후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이 고가 요금제에 집중되고 저가 요금제에 대한 지원금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이용자가 선택하는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격차가 과도하여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의 실질적 혜택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이용자가 선택하는 요금제를 이유로 요금제 간 지원금의 차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도록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하면서 전기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단말장치에 적용할 수 있는 요금제별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 조건을 이용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제32조의12제1항제1호 · 제2호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2026-05-12 발의

현행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책임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이 변경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책임주체의 확인이 곤란할 수 있음. 또한 국내대리인의 연락 가능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인공지능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도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근거가 없어 책임체계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변경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인공지능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해외 인공지능사업자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안 제36조 및 제43조)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2인)

2026-05-13 발의

현행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조성·운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을 위하여 분담금을 징수하는 대상 사업자의 범위가 협소하여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OTT, 포털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2개 이상 등록한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가 제외되어 있어 사업자 간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기존에 분담금 납부 대상인 사업자들의 경우 매출 감소 등 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엄격한 기금 징수 기준을 적용받고 있음

이에 OTT, 포털사업자, 복수채널사용사업자를 분담금 징수대상에 추가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징수 기준을 완화하며, 방송통신콘텐츠 제작비용 지출 규모, 영업손실 등을 분담금의 면제·경감 또는 징수율 차등 책정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5조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2026-05-14 발의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납치광고나 플로팅 광고, 가입·이용 또는 해지·전환 과정에서 온라인 인터페이스에 다크패턴을 설계하는 행위가 빈번함에도 이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웹페이지 또는 화면으로 전환되게 하거나 이용 중인 웹페이지 또는 화면의 종료·전환을 제한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 제한하는 행위 및 온라인 인터페이스에서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해지·전환에 관한 선택사항을 부당하게 표시하거나 이용자가 특정 항목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설계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3호의2, 제50조제1항제5호의4부터 제5호의6까지 신설 및 제51조)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3인)

2026-05-11 발의

현행법은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사용 장비를 추가하는 경우 등에는 해양수산부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질량유량계 등 공급량 측정기기의 설치의무는 없어 선박연료의 정량 공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그런데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은 면세유 불법유통과 잦은 공급량 분쟁 등으로 대외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며, 싱가포르 등 해외 선진항만에 비해 정량 공급제도 및 측정결과의 기록·보관 등에 있어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선박연료공급업자에게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의 설치 및 측정결과의 기록·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선박연료 정량 공급 의무제도를 도입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연료공급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26조의4 및 제29조의5 신설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3인)

2026-05-11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됨. 그런데 최근 일부 지식산업센터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의 영위가 가능하지 않은 시설을 부동산 임대업 영위가 가능한 것처럼 속이고 입주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입주자는 거짓에 의한 모집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입주자와 분양 또는 임대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해당 시설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별도의 문서로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확인 서명 등을 받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5또한 산업집적법의 소관부처인 산업통상부에 지식산업센터 분양 및 임대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 분양 및 임대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안 제28조의4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2026-05-11 발의

현행법은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가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에 관하여 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멘트를 재활용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별도의 정보 공개 의무가 없어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관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주택의 경우 소유자 또는 입주자는 건설 과정에서 사용된 시멘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받지 못해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음

이에 시멘트를 재활용하거나 시멘트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도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시멘트를 판매하는 자는 판매자와 판매량을 포함한 유통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13조의6 및 제66조제1호의4)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의원 등 10인)

2026-05-11 발의

‘노란봉투법’의 개정으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사용자의 범위가 정해지게 됨에 따라,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중단하거나 해외로 이전하게 되는 경우에 중소 협력업체가 도산하고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상실하는 등 우리나라 원하청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음

또한 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사용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인사·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제외한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정당한 경영권이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2호 및 제5호)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2026-05-13 발의

현행법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에게 제조·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확인·승인을 받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등에 대한 판매중개와 구매대행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 직접구매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중개 및 구매대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가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제품의 판매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해당 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35조, 제40조, 제50조 등)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2026-05-13 발의

현행법은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거나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수입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있음. 또한, 승인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제조·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에 승인신청을 하여 물질승인 및 제품승인을 다시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승인을 위한 평가가 유효기간 종료 전까지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 살생물물질이나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해당 물질이나 제품을 제조·수입하지 못하게 되어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물질승인 및 제품승인에 관한 평가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충분한 평가 기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13조 및 제21조)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2인)

2026-05-15 발의

현행법은 제조·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을 받지 않은 살생물물질에 대한 판매·증여, 판매·증여 목적으로 진열·보관·저장한 사람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또한, 회수, 폐기 등 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수입·판매·유통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 가운데 포장·광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 이러한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포장·광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52조의2)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4인)

2026-05-15 발의

현행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 배출량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미세먼지는 국내 배출원뿐 아니라 국외 유입, 기상요인 등의 복합적 요인이 작용함에도 주로 국내 위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발생원인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외 유입, 기상요인 등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안 제17조)**

국토교통위원회

혁신건축 융복합 건축물 조성 지원법안(전용기의원 등 10인)

2026-05-11 발의

최근 로봇·자율주행차·도심항공교통(UAM)·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건축공간의 구조와 이용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건축물은 단순한 물리적 시설을 넘어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건축·도시·모빌리티·정보통신 등 분야별로 개별 규율되고 있어, 혁신기술을 건축물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적용·실증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관련 기준 부재와 인허가 불확실성으로 인해 민간의 기술 도입과 투자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혁신기술을 건축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설계·시공·운영 전반에 걸친 제도 정비와 함께, 초기 실증을 위한 선도사례 마련 및 공공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혁신기술을 건축물에 융복합한 혁신건축물의 조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규제 특례, 실증 지원 및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건축산업의 혁신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2026-05-12 발의

현행법은 택지의 공급 절차·방법 및 대상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해서는 택지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내 의료시설용지는 장기간 공급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를 적절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의료기관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특히 의료시설용지는 주민의 정주여건과 의료접근성 확보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의 성격을 가짐에도 장기 미공급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 마련이 충분하지 않아 공공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자가 장기간 공급되지 아니한 의료시설용지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공급가격을 택지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시설의 적기 확충과 택지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제4항 및 제19조의2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3인)

2026-05-13 발의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가경제와 산업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산업으로서, 정부는 인프라·인재 투자, 첨단기술 생태계 조성,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반도체 생산시설은 다수의 공정동(Fab), 폐수처리시설, 전력·가스 공급시설 등 복수의 건축물과 기반시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대규모 복합 산업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개별 부지 단위의 건축허가를 전제로 설계되어 동일 공장부지 내 복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등을 병행하여 처리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로 인해 선행 건축 허가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동일 공장부지 내에 다른 공정동 등 별개의 건축물로 볼 수 있는 건축물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건축 허가의 신청이 제한되어 실제 공정 일정과 무관하게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 착수 시점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전략산업 인프라의 적기 구축에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산업단지 등에서 설치되는 산업시설에 대하여 동일 공장부지 내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동이나 시설별로 건축허가를 별도로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절차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핵심 인프라의 신속한 구축을 지원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1인)

2026-05-14 발의

현행법은 정비사업시행자가 과밀억제권역 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으로 기존의 용적률 체계로는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졌으며, 이는 곧 정비사업의 중단이나 지연으로 이어져 도심지역의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비사업시행자가 과밀억제권역 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 및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54조제1항, 제66조제1항 및 제2항)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산자위	전체회의	5/19(화) 10:00	- 법안 상정
	산업통상자원소위	5/19(화) 14:00	- 법안 심사
	중소벤처기업소위	5/20(수) 10: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5/20(수) 14:00	- 법안 의결
기후노동위	기후에너지환경 법안소위	5/19(화) 09:3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5/19(화) 11:30	- 법안 의결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5/18(월) 14:00	육·해·공사 통폐합과 수도권 축출의 문제점 진단	한기호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5/19(화) 14:00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법 개정 토론회	김정호·이주희 의원실 등	의원회관 대회의실
	5/19(화) 14:00	위험업무 2인1조 의무화 법개정 토론회	강득구 의원실 등	의원회관 5간담회의실
	5/19(화) 14:00	일상을 흔드는 여성암을 파헤치다: 여성암 1위 유방암	이주영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5/20(수) 10:00	피지컬 AI 시대, 일자리와 보안	김장겸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5/20(수) 14:00	이란전쟁이 던진 질문: 우리의 드론, AI 준비되어 있는가?	유용원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5/20(수) 14:30	2026 지방선거 전망 토론회	박지원·주호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6간담회의실
	5/22(금) 13:30	한국미디어포럼 창립식: AI시대 미디어 정책토론회	김문수 의원실 등	의원회관 11간담회의실
자료집 등	5/18(월)	「최신외국정책정보」 제2026-9호(통권 제30호) 발간	국회도서관	
	5/20(수)	「금주의 서평」 제2026-19호(통권 제778호) 발간		
	5/20(수)	「Data&Law」 제2026-5호(통권 제43호) 발간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31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5/12(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26-9호(통권 제297호)	국회도서관	
	5/13(수)	「금주의 서평」 제2026-18호(통권 제777호)		
	5/13(수)	「Data+」 제2026-7호(통권 제31호)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5/12(화)	입법전략자문	기업 보유 농지의 전수조사 실시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5/12(화)	글로벌리스크대응	[통상산업정책 뉴스레터] 이란 전쟁과 ‘물류 이전 단계’ 리스크의 구조적 등장
5/13(수)	공정거래	공정위, 위원 정수 증원 및 디지털포렌식 조직 신설 등 조직 개편
5/14(목)	방송통신(TMT)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 발표
5/14(목)	공정거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및 공정위의 플랫폼 불공정약관 심사 관련 시사점
5/15(금)	환경	개발사업을 성공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2) - 판례로 본 환경영향평가법 핵심 이슈
5/15(금)	건설/부동산	세종 건설클레임센터 Monthly Insight 5월호
5/15(금)	기업지배구조/ 경영권 분쟁	[2026년 정기주주총회 리뷰] 제4호 : 권고적 주주제안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